

2022 공적부조 최종 규정안에 대한 설명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를 DHS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와 관련해 비시민권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규정 최종안을 연방정부 공보에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이전 정부에서 메디케이드와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조 보건혜택까지 공적부조 기각 요건으로 간주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원래의 '공적부조'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날 새 규정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리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헌신을 잘 말해준다.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로 간주된다는 것은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또는 합법적 영주권 (흔히 그린카드라고 알려진)이 거부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19년 이전에는 메디케이드 또는 영양 지원과 같은 거의 모든 비현금성 혜택은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제는 철회되어 효력을 잃었지만 2019년의 규정 시행은 이민자 신분이 뒤섞여 있는 가정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과 같이 공적부조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복지혜택 신청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었다. 연방 정부 공보에 고시된 이번 규정은 그동안 이어져 온 조항을 성문화 함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으로 DHS는 이민거부 사유의 공적부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 합니다:



심사대상을 위한 확실성 제공;



새로 추가 되거나 부담스러운 양식 작성과 근거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연방의회 결정과 일관성있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



심사관 및 비시민권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체류기간 연장과 신분 변경을 위한 비이민 신청과 청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또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이 불공정한 취급을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



원래 심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민절차에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어 공공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움츠림 효과"를 막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벽 제거; 또한



이민거부사유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공공혜택 이용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